

거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

○ 제안일 : 2004. 1. 8.

○ 제안자 : 김정희의원외 4명

나. 회부일자 : 2004. 1. 9.

다. 상정일자 : 2004. 1. 14.

(제10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4 - 1호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, 보조 활동비는 신설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의정활동비 월 550,000원 ⇒ 월 900,000원으로 인상(안 제6조)

○ 보조 활동비 신설 월 200,000원(안 제6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고 의정활동에 따른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

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써

-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#### 5. 토론요지

- 생략

##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550,000원을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900,000원으로 인상하고, 시도의회 의원에게만 지급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의정보조활동비를 매월 200,000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#### 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#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